대한민국 비자포털 회원가입 절차 등

1. 비자(사증) 업무처리 개요



2. 대한민국 비자포털 신청 절차

1 회원가입 신청

- 비자포탈(www.visa.go.kr)에 접속, 유치기관 기업개요 및 전담직원 인적
 사항을 입력하고 제출서류를 전자파일(스캔)로 등재·신청
 -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
 기관 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마친 자가 신청가능
 - 재가입 제한기간이 경과한 유치기관이 기존 비자포털 아이디를 계속
 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, 오프라인 신청만 허용
 - ※ 유치기관 소재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, 출장소)이 회원가입 심사, 전자 사증신청 검토, 사증발급인정서 심사

【 대한민국 비자포털 회원가입 절차 】
① '외국인환자 유치기관'이 포함된 기업회원 가입 메뉴를 선택
② 회원약관, 개인정보 취급방침, 고유식별정보 수집 등에 동의
③ 사업자등록정보*, 기업정보, 담당자 정보 등을 입력
* 비자포털 ID 및 비밀번호, 사업장명(상호), 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의 종류,
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, 사업장 주소 정보
④ 사업자등록증, 유치기관 등록증, 대표자 신분증 등 제출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
업로드

2 제출서류

- 사업자 등록증 사본,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, 대표자 신분증 사본
- 전담직원으로 근무하려는 자의 재직증명서, 고용계약서 및 유치기관
 대표의 위임장^{*}
- * 붙임 1의 `출입국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직원 지정 신청서'로 갈음

③ 회원가입 후 정보변경 절차

- 유치기관 휴・폐업, 대표자·전담직원 변경 시, 15일 이내에 비자포털 에서 유치기관 회원정보(사업자/담당자 변경) 반드시 변경
 - 단, 대표자·전담 직원 변경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을 초청할 경우
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전까지 변경 등록
- O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번호, 대표자, 전담직원, 사업장명 등을 변경 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, 의료관광 유치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변경 가능
- O (기타사항) 기존 타사무소 회원가입자가 관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에 준하여 유치기관 심사

3.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시 혜택

구 분	<u>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</u>	일반 유치기관
사증신청 방법	비자포털(visa.go.kr)에서 온라인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전자시증 신청을 통해 외국인 초청 ※ 신청일 기준 3일 이내 발급	비자포털(visa.go.kr)에서 온라인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을 통해 외국인 초청 ※ 재외공관에 해당 비자 신청
제출서류	외국인 재정입증서류 <u>생략 가능</u> (전자사증 신청 시에만 적용)	외국인 재정입증서류 <u>제출</u>
간병인 및 동반가족	4촌 이내 형제·자매 등에도 허용 (전자사증 신청 시에만 적용)	<u>직계가족</u> 만 허용
불법체류 행정제재	행정제재 이후 3개월 이내 1명 이상 불법체류 발생 시 <u>가중처벌</u> <u>적용 제외</u>	행정제재 이후 3개월 이내 1명 이상 불법체류 발생 시 가중처벌 (1단계 상향 적용)
법무부 지정증서	<u>2년 간</u> 유효한 우수 유치기관 지정증서 발급	해당 없음

※ 코로나19로 인해 '20. 3월부터 전자비자 발급 잠정 중단

※ 3개월 이상 정지 처분 이상 행정제재를 받을 경우 우수 유치기관 자격 취소